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관

정관시행세칙

연혁

I. 정관

제정 : 1959. 12. 24.
 개정 : 1964. 8. 24, 1967. 12. 7, 1974. 7. 31, 1975. 10. 20, 1976. 1. 20, 1977. 1. 8, 1977. 8. 26, 1978. 7. 10, 1979. 1. 25, 1979. 2. 29, 1981. 11. 21, 1982. 3. 1, 1983. 11. 9, 1984. 6. 8, 1985. 2. 23, 1986. 6. 12, 1987. 11. 17, 1990. 5. 7, 1990. 12. 7, 1991. 4. 22, 1992. 3. 1, 1997. 11. 21, 1998. 11. 13, 1999. 7. 16, 2000. 8. 4, 2001. 2. 9, 2001. 6. 28, 2002. 3. 22, 2002. 7. 25, 2003. 5. 29, 2004. 3. 11, 2005. 5. 10, 2005. 9. 29, 2006. 6. 26, 2006. 8. 4, 2006. 11. 21, 2007. 3. 5, 2007. 9. 10, 2008. 4. 28, 2008. 12. 22, 2009. 3. 9, 2009. 9. 16, 2010. 2. 24, 2010. 4. 21, 2010. 11. 5, 2011. 4. 27, 2011. 8. 5, 2012. 2. 2, 2012. 2. 27, 2012. 8. 21, 2012. 9. 21, 2012. 12. 18, 2013. 2. 15, 2013. 4. 25, 2013. 6. 25, 2013. 8. 27, 2013. 11. 27, 2014. 2. 27, 2014. 3. 18, 2014. 4. 24, 2014. 7. 24, 2014. 11. 21, 2014. 12. 30, 2015. 6. 26, 2015. 8. 20, 2015. 9. 22, 2015. 10. 23, 2015. 12. 18, 2016. 2. 23, 2016. 3. 30, 2016. 7. 22, 2016. 8.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부산외국어대학교
 2. 성지고등학교(개정 2009.09.16)
 제4조(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둔다.(개정 2014.03.18.)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2.09.2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9.09.1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06.11.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1)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임시이사(사)가 파견될 경우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02.23.)

제12조의 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 ①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제 3 절 (제13조 내지 제 17조)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

제22조의2(상근임원)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 상근할 수 있고, 상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04.28)

1. 이사장(신설 2008.04.28)

2. 상임이사(신설 2008.04.28)

②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신설 2008.04.28)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16.02.23.)

1. 이사 4년(개정 2006.11.21)

2. 감사 3년(개정 2006.11.21, 2016.02.23.)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9.16, 2013.06.25.)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9.16)

1. 대학평의원회 : 3인

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9.09.16)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 재직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9.09.16)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할 때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9.16)

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삭제

제24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1.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소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2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2 및 제2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9.1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02.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02.23.)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09.16)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09.16)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09.16)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4.07.24)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2.23)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제35조의 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

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 3(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09.16)

제35조의 4(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1)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1.21)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은 평의원의 임기 중에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평의원에서 해촉되며,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6.11.21)
- ④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11.21)

제35조의 5(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소집) 평의위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제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5조의 7(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9.09.1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 4 절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35조의 8(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연령,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21)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의 9(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

12 학교법인 성지학원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02.23]

제 5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5조의10(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4)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업(토지, 기계)
2. 조림업
3. 서비스업
4. 교육사업 (신설 2013.11.2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13.11.27)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부를 둔다.

1. 성지학원 수익사업부
2. 외대골프아카데미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둔다. (신설 2013.11.27.)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16)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09.16,2016.02.23)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09.16)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용(개정 2016.02.23)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의 총장은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은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2013.08.27,2016.02.23)

②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학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대학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2.27, 2014.02.27,2014.11.21,2016.02.23)

1. 근무기간

-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3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라. (삭제 2012.08.21)
- 마. (삭제 2012.02.27)

2. 급여: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교수시간, 연구업적

및 성과, 학생지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4. 재계약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 교목실장, 실·처장, 본부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0,2013.06.25,2014.07.24)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6.02.23)

제43조의 2(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교사 임용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02.27)

제43조의 3(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과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정관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2.23]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 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

[전문개정 2016.02.23]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9.16)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3)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6.02.23)
- 6의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6.02.23)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2.23.)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국회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2. (삭제 2016.02.23)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39퍼센트)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5퍼센트)을 지급하며 공무원 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②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반액(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28퍼센트)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2014.02.27,2016.02.23)

③ 제4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2016.02.2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

- 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
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범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
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02.
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09.16,2016.02.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
한 보수는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
의 45퍼센트)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
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
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의
보수는 봉급의 5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28퍼센트)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2014. 02.
27)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9.09.16,2016.02.23)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
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
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
다.(개정 2009.09.16,2016.02.23)
-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
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
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09.
16, 2016.02.23)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
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
한다.
2.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
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2.27]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
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
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
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부), 교육 및 연구관련 기
구 또는 직제 등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
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9.21,
2013.04.25)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
21,2013.04.25)

제50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
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
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
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
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 4(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
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21, 2016.02.23)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21, 2016.02.23)
 - 2. 교원의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21)
- ②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21)
-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과 같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활동
- 3. 교내외 봉사 실적
-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교원 및 직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5.09.22)

- 1. 대학교는 18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단, 위원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함). (개정 2006.06.26, 2013.06.25, 2014.04.24, 2015.09.22, 2015.10.23)
- 2. 고등학교는 7인의 교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7.)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06.25, 2015.09.22)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8.25.)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5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1인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7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제63조의 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1,2014.11.21)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

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양정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징계양정은 공적 등에 따라 감경하거나 비위행위의 경함과 시기에 따라 가중할 수 있으며,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감경과 가중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09.21.][전문개정 2013.04.25.](개정 2016.02.23)

제66조의 3(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21,2016.02.23)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16.02.23)
-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16.02.23)
-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6.02.2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9.21)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

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08.25)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제 3 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대우직원 선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

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복무) ①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고등학교의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02.23]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2.27]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09.21)

제87조의 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2009.03.09)

② 명예퇴직 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09)

③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 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03.09)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12.09.21)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업무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4.27)

③ 이 법인과 설치학교의 건학정신 구현 및 선교 활동을 위하여 대학교회와 선교위원회를 두며, 선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4.27,2014.11.21)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제1부총장, 제2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제1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제2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임부총장의 자격 및 임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4.27,2014.07.24,2015.08.20,2015.09.22,2015.12.18)

④ 제1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 제1부총장, 제2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1부총장, 제2부총장, 특임부총장의 분장 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05,2014.07.24,2015.08.20,2015.09.22, 2015.12.18)

⑤ (삭제 2014.07.24)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9.09.16)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실을 두며, 교목

은 목사자격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대학교에 경영지원실, 행정관리실, 안전방재관, 특성화사업관리실, ACE사업단, CORE사업단, 산학협력단, 교육혁신교무처, 기획처, 글로벌인재육성처/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학생복지처, 입학관리처를 둔다.(개정 2015.09.22,2015.12.18,2016.03.30,2016.07.22)

③ 처장, 실장,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안전방재관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22, 2015.12.18)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부 조직의 단장 및 원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센터장·부장 및 실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또는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연구소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으로, 팀장은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09.22,2016.02.23)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08.20]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제94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과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장 및 부기관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2.02.02,2014.07.24,2015.09.22,2016.07.22,2016.08.25)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제95조(삭제) (개정 2007.09.10)

제 3 절 고등학교

제9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3.08.27)

제9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교목실과 행정실을 두고 교목은 목사자격자로서 교사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2.02)

제98조(행동강령) 고등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5.06.26)

제 4 절 정 원

제100조(정원 및 정년) ①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 및 정년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학교 사무직원 근속승진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인과 각급학교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각급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로서,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속자 혹은 특별채용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05)

제 8 장 보 칙

제10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3.06.25)

제10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3조(설립당초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정태성	4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이사	임봉은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임지수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정해덕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정해수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부 칙

이 정관은 195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2 학교법인 성지학원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성지공업전문대학에 관한 종전 규정의 변경사항은 학교법인 서린학원이 설립인가를 받고 법원에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

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정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며, 정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대학교원부터 적용되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교 수: 정년
 - 2. 부 교 수: 6년
 - 3. 조 교 수: 3년
 - 4. 전임강사: 2년
 - 5. 조 교: 1년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임면되는 학교의 장과 조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52조 제1항 및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및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4조의 4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직 임면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보임 중인 도서관장은 제4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08. 0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2. 0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2. 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8.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9.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2. 1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4.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6.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8. 27)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교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감은 2013년 9월 1일자부터 이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 11.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2. 27)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 일반직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신규 임용된 2급 및 3급 일반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정년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4. 03.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7.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1.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부규정의 폐지) 이 정관의 시행과 함께 대학교의 “대학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4. 12.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6.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8.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9.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0.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2.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2.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48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6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개정 2016.02.03)를 따른다.
- ② (적용례) 제43조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 및 제44조 제7호의2 개정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관한 적용은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개정 2016.02.03)를 따른다.

부 칙(개정 2016. 03.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7.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8.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일반직원 정원

총 계	42명
일반직계	3명
2급(참여)	
3급(부참여)	1명
4급(참사)	
5급(부참사)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수익사업계	39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3명
의사	3명
의료기사	3명
간호원	2명
보조간호원	10명
약사	1명
영양사	1명
운전기사	1명
잡부	14명

(별표 2) (개정 2014.2.27.)

학교 일반직원 정원표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지고등학교		비고
직 급	정원수	직 급	정원수	
총 계	108	총 계	30	
일반직 계	107	일반(기술)직 계	29	
G1(책임행정관)	26	2급(참 여)		
G2(선임행정원)	54	3급(부참여)		
G3(담당행정원)	27	4급(참 사)		
		5급(부참사)	1	
		6급(주 사)	2	
		7급(부주사)	4	
		8급(서 기)	7	
		9급(부서기)	15	
별 정 직 계	1	별 정 직 계		
		기술 직 계	1	
		4급 사서관		
		5급	사 서 관 전산처리관	
		6급	사 서 전기 기사 전산처리사	
		7급	사 서 보 전기기사보 전산처리사보	
		8급	사서 서기 전기 기원 전산처리원	
		9급	사서서기보 전기기원보 전산처리원보	1
고용직계		고용직계		

(별표 3) (개정 2014.2.27,2016.02.23.)

학교 일반직원의 정년

구 분	정 년		비 고
부산외국어대학교	G1 (책임행정관)	만60세	
	G2 (선임행정원)	만60세	
	G3 (담당행정원)	만60세	
성지고등학교	국가공무원법 준용		

(별표 4)

사 학 윤 리 강 령

지난 한 세기 동안 사학은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사학은 지금, 새 세기의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재를 양성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사학경영자 일동은 교육입국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사학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강령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권면과 제재로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건학정신

우리는 사학의 뿌리가 숭고한 건학정신에 있음을 명심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일에 헌신한다.

○ 공공성

우리는 사학경영에 있어서 학원내외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공성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자주성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학의 본질을 침해하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단호하게 배격하며, 자율적으로 교육방침을 실천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양양한다.

○ 경영합리화

우리는 사학경영을 합리화·효율화하고, 모든 교육자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 화합·협력

우리는 사학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II. 정관시행세칙

제정 : 2011. 4. 2.

개정 : 2012. 9. 21, 2014. 7. 24, 2014. 11. 21, 2016. 02. 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관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실패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제무·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입·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학교의 장은 매 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07.24)

1.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인사, 보수, 직제 등,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4. 학교의 건축 등,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 등,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고문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고문 및 상근임원의 위촉 및 보수) 상근하는 법인 고문 또는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고문 및 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이사회의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정적용기준) 법인 직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에 대하여는 학교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교원 임용 승인신청) 정관 제43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 23)

제11조(직원임용 제정)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정은 발령 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직원 신규임용)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활용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3조(각종 규정류 등) ①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

류”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반 체계적인 규범형식인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를 말한다.

② 동 시행세칙 제5조에 관련된 규정류는 다음 각 호1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승인으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 1. 관련 상위 법규 및 정관의 변경
- 2. 용어 변경 등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조문 변경
- 3. 기타 위 각호에 상응하며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 시행세칙 제5조에 관련된 규정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될 경우 이사장은 관련규정의 제정·개정·폐지를 학교에 권고하거나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1]

제14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7. 27)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1.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2. 23)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연혁

1959. 12. 24 재단법인 성창학원 설립
초대 이사장 고 정태성 박사 취임
1981. 11. 21 학교법인 성지학원으로 변경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태국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 10개학과)
1982. 3. 1 초대 학장 박화술 박사 취임
중앙도서관, 어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문화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시청각교육원 설치
3. 12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3. 24 외국어연수원 개원
3. 31 국제회의실 및 동시통역실 개관
5. 25 학보 창간(제호 : “부산외대학보”)
6. 8 교육 방송국 개국
10. 5 5개 학과 신설(스페인어과, 아랍어과,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전산학과)
1983. 8. 7 종합시청각실·사운드라이브러리 개관
9. 8 2개 학과 신설(인도어과, 외교학과), 야간강좌 2개 학과 개설(영어과, 독일어과)
10. 31 본관 착공
1984. 2. 21 새마을연구소 설치
9. 4 본관 준공
9. 11 박물관 개관
10. 5 야간강좌 2개 학과 개설(불어과, 일본어과) 및 정원 증원(영어과·영어나(야), 일본어과)
11. 22 학군사관후보생(R.O.T.C.)과정 설치
1985. 2. 21 무역경영연구소 설치
4. 29 외국어특별강좌 개설
9. 1 학생회관 개관
10. 2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체국 개국
11. 2 정원 증원(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12. 9 초대 이사장 정태성 박사 퇴임
12. 30 제2대 이사장 정해수 이사 취임
1986. 2. 22 제1회 학위 수여식(238명)
3. 1 제2대 학장 박화술 박사 취임
4. 15 법학연구소 설치
7. 23 종합강의동 착공
10. 26 영자신문 창간(제호 : “The Sermo”)
11. 1 포르투갈어과 신설
1987. 2. 21 제2회 학위 수여식(410명)
8. 31 종합강의동 준공
10. 23 언어학과 신설 및 야간강좌 국문학과 개설
12. 17 자매결연(태국 치앙마이 국립대학교)
1988. 1. 5 전자계산소 설치
2. 1 취업보도실 설치
2. 11 제2대 학장 박화술 박사 퇴임
2. 16 제3대 학장 김동선 박사 취임
2. 27 제3회 학위 수여식(566명)
3. 2 부산외국어대학교 소비조합 설치
3. 25 교지편찬국 설치
8. 26 출판부 설치
10. 29 4개 학과 신설(노어과, 경제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및 야간강좌 전산학과 개설
11. 30 대학원 신설(석사학위과정 : 영어영문학과, 법학과)
12. 제2대 이사장 정해수 이사 퇴임
국제문제연구소 설치
1989. 2. 1 제3대 이사장 서정실 이사 취임
2. 25 제4회 학위 수여식(752명)
10. 28 2개 학과 신설(이태리어과, 사회체육학과)
11. 6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신설
12. 30 교육대학원 설치(석사학위과정 : 영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

- | 육전공) | 전공 신설 |
|--|--|
| 1990. 2. 23 제5회 학위 수여식(920명) | 1993. 2. 26 제8회 학위 수여식(1,195명) |
| 6. 25 중앙도서관 준공 | 2. 28 초대 총장 김동선 박사 퇴임 |
| 7. 비디오투리개관 | 3. 4 종합강의동(8호관) 준공 |
| 9. 5 TV 방송국 개국 | 8. 20 제4대 이사장 정해린 이사 취임 |
| 10. 16 베트남어과 신설 | 9. 4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일어일본학과
신설 |
| 11. 8 대학원 4개 학과 신설(석사학위과정
: 독어독문학과, 전산학과, 외교학과,
경영학과) | 9. 6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일어교육전
공 신설 |
| 1991. 2. 7 학부제 개편(서양어학부, 동양어학부,
인문사회학부, 경상학부, 이공학부, 2
부학부) | 1994. 1. 11 제2대 총장 박봉식 박사 취임 |
| 중·소문제연구소 설치 | 1. 14 자매결연(일본 다이토우분카(大同文
化)대학) |
| 2. 22 제6회 학위 수여식(902명) | 2. 25 제9회 학위수여식(1,186명) |
| 6. 3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개관 | 7. 4 자매결연(중국 상하이(上海)외국어대
학교) |
| 7. 8 자매결연(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 | 9. 5 4개 학과 신설(중앙아시아학과, 사학
과, 철학과, 전자공학과) 및 야간강좌
경영학과 개설, 학과명 변경(인도어과
→남아시아학과) |
| 7. 19 자매결연(중국 이엔타이(烟台)대학) | 10. 21 국제경영대학원 설치(석사학위과정 :
국제경영전공, 국제무역전공, 경영정
보전공) |
| 9. 17 자매결연(모스크바 자오치느이사범대
학) | 10. 29 자매결연(미국 토우슨주립대학교) |
| 9. 20 자매결연(모스크바외국어대학교, 모스
크바국립사범대학) | 1995. 2. 24 제10회 학위 수여식(학사 1,211명, 석
사 60명) |
| 10. 22 미얀마어과 신설 및 학과명 변경(국문
학과→국어국문학과, 전산학과→컴퓨
터공학과) | 10. 20 제2대 총장 박봉식 박사 퇴임 |
| 컴퓨터공학과(야) 정원 증원 | 10. 23 체육관 준공 |
| 10. 28 종합대학 승격 인가(5개 대학 27개 학과) | 1996. 2. 23 제11회 학위 수여식(학사 1,180명, 석
사 54명) |
| 11. 16 대학원 학과명 변경(전산학과→컴퓨
터공학과) | 3. 5 제15회 입학식 |
| 11. 18 대학원 2개 학과 신설(석사학위과정
: 불어불문학과, 아주지역학과) | 4. 22 제3대 총장 조규향 박사 취임 |
| 교육대학원 2개 전공 신설(석사학위
과정 : 독어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 5. 27 자매결연(인도네시아 봉하타대학교) |
| 12. 종합강의동(8호관) 착공 | 9. 10 외국학연구센터·아주지역연구소 신
설, 연구소 개편(어학연구소→어문학
연구소, 문화연구소→비교문화연구소,
무역경영연구소→국제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비교법연구소), (국제문
제연구소, 중소문제연구소 통합 국제
관계연구소) 편제개편(학생생활연구
소, 취업보도실 통합 학생생활·취업
정보센터, 어학연수원→국제언어교육 |
| 1992. 2. 23 제7회 학위 수여식(1,152명) | |
| 2. 28 초대 총장 김동선 박사 취임 | |
| 7. 28 대학원 2개 학과신설(석사학위 과정 :
언어학과, 무역학과) | |
| 7. 31 경영정보학과 신설 및 야간강좌 2개
학과 개설(노어과, 중국어과) | |
| 단과대학명 변경(경상대학→상경대학) | |
| 9. 1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학교육 | |

- 원), 사회과학연구소 폐소
- 10. 24 야간강좌 경영정보학과 개설
- 10. 30 교육대학원 2개 전공 신설(석사학위 과정 : 체육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 11. 2 국제경영대학원→국제경영지역대학원으로 개편 및 2개 전공 신설(석사 학위과정 : 아프리카지역전공, 아주지역전공)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설치(영어영문학과)
- 11. 4 자매결연(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
- 1997. 1. 9 자매결연(베트남 호지명머반공대학교)
- 1. 13 자매결연(베트남 호지명인문사회과학대학)
- 2. 6 자매결연(인도 델리대학)
- 2. 14 자매결연(태국 람캄맹대학교)
- 2. 21 제12회 학위 수여식(학사 1,370명, 석사 26명)
- 4. 1 국제관 준공
- 5. 30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설치인가
- 6. 30 자매결연(인도네시아 국립대학)
- 7. 9 자매결연(폴란드 오폴레대학)
- 8. 6 부산지역 8개 대학 학술교류협정 체결(부산외대,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해양대, 경성대, 동의대, 신라대)
- 9. 20 부산지역 5개 대학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 수립에 관한 협정 체결(부산외대, 동아대, 부경대, 동의대, 신라대)
- 10. 13 대학학생 정원조정(야간 30명 증원)
- 10. 25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 11. 8 제17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주최
- 11. 10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을 위한 국제대학으로 선정(교육부 지정)
- 12. 15 편제개편(입학과, 시설관리과, 연구교류부 신설, 교무과 · 학적과 통합→교무과, 학생과 · 장학후생과 통합→학생과, 총무과 · 경리과 통합→총무과)
- 연구소 설치(지중해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연구소 개편(국제경영연구소→국제통상연구소, 아주지역연구소→아시아지역연구소)
- 외국학연구센터 폐소
- 12. 27 공무원 국외훈련을 위한 어학검정기관으로 선정(총무처 지정)
- 1998. 2. 12 가상대학 시범운영 기관 선정(교육부 지정)
- 2. 20 제13회 학위 수여식(학사 1,146명, 석사 40명)
- 2. 21 총장 직무대리 문영득 교무처장 임명
- 2. 24 제 3대 총장 조규향 박사 퇴임
- 3. 3 제 17회 입학식
국제통상지역원 개원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8. 27 자매결연(미국 애크론대학)
- 9. 1 제 4대 총장 서의택 박사 취임
- 9. 11 국제관 증축 개관식
- 9. 22 국제통상지역원 교육부 실사
- 10. 19 '99학년도 학부제 개편 : 32개 모집단위에서 28개 모집단위로 변경(철학과 주간모집) [영어과→영어학부, 국어국문학과 · 언어학과 · 철학과(야간) · 사학과→인문계열, 법학과→법학부, 외교학과→외교학부, 경영학과→경영학부, 무역학과 · 경영정보학과(주간)→무역 · 경영정보학부, 회계학과 · 경제학과→국제회계경제학부, 수학 · 통계학과→정보수리과학부, 컴퓨터공학과(주간) · 전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부]
- 학과명 변경(노어과→러시아어과, 남아시아학과→인도어과, 중앙아시아학과→중앙아시아어과)
- 10. 26-27 대학종합평가 실시
- 10. 28 국제통상지역원 '98년 교육부 평가,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분야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
- 11. 7 제 18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 주최
- 11. 26 자매결연(미국 윌러국제대학)
 - 1999. 1. 1 연구소 신설(정보과학 연구소)
 - 1999. 1. 20 자매결연(중국 북경어언문화대학)
 - 2. 19 제14회 학위 수여식(학사 1,338명, 석사 39명)
 - 1999. 2. 22 대학종합평가 3개영역 우수대학 선정(연구, 시설·설비, 사회봉사)
 - 3. 5 자매결연(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 1999. 3. 13 자매결연(일본 고시엔대학교)
 - 3. 23 자매결연(이태리 페루지아외국어 대학교)
 - 4. 1 직제개편(교무처, 학생처→교학지원처, 종합기획실→기획조정처, 사무처→총무지원처, 교무과→교육지원팀, 연구교류과→연구지원팀, 학생과→학생지원팀, 기획과→기획/홍보팀, 입학과→학생선발팀, 총무과→총무행정팀, 시설관리과→시설지원팀, 수서과·열람과→학술정보지원팀)
 - 신설(예산팀, 전산정보지원팀, 대학원 교학지원팀, 외국어교육지원팀)
 - 1999. 9. 3 국제통상지역인 교육부 실사
 - 10. 14 대학 학생 정원 조정(신설-전자공학과 야간 50명 증원 증원-전자컴퓨터공학부 80, 인문계열 20, 법학부 10, 경영학부 20, 경영학부 야간 20)
 - 11.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5명 증원 인가
 - 11. 6 제19회 전국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주최
 - 11. 19 교육대학원 20명 증원(역사교육전공 신설)
 - 2000. 1. 11 정보통신부지정 정보통신분야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지원대학 선정
 - 2. 2 일반대학원 종합평가 3개 영역 우수(교육과정, 수업 및 논문지도, 재정·경영)
 - 2. 18 제15회 학위수여식(학사 1,393명, 석사 80명)
 - 2. 20 대학교회 창립
 - 3. 10 자매결연(인도 네루대학)
 - 5. 14 자매결연(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 6. 13 학문분야(법학) 현지방문평가
 - 8. 8 대학 학생정원조정
 - 이공대학 → 정보과학대학 · 영어학부(주) 60 → 65 · 불어과(주) 50 → 45 · 불어과(야) 40 → 35 · 독일어과(주) 50 → 45 · 러시아어과(주) 40 → 35 · 러시아어과(야) 40 → 35 · 일본어과(주) 60 → 65 · 중국어과(주) 60 → 65 · 말인니어과 50 → 40 · 인문계열 철학과 → 인문계열 문화학과 · 인문계열 사학과 → 인문계열 역사학과 · 경영학부(주) 70, 경영학부(야) 70, 무역경영정보학부 경영정보전공 20, 국제회계경제학부 회계학전공 50, 경영정보학과(야) 10 → 경영학부(주) 145 경영전공, 회계전공, e-비즈니스·경영정보전공, 경영학부(야) 90 · 무역경영정보학부 무역학전공 50, 국제회계경제학부 경제학전공 50 → 국제통상학부 100 국제무역전공, 국제경제전공 ·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200 → 컴퓨터전자공학부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응용전공, 정보통신전공, 전자정보전공 200 · 컴퓨터공학과(야) 50 → 45 · 전자공학과(야) 50 → 45 · 정보수리과학부 응용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 100, 무역경영정보과학부 경영정보전공 30 → 정보경영과학부 정보시스템전공, 정보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 130 · 경영정보학과(야) 30 → 정보시스템학과(야) 40 · 사회체육학과 60 → 레저·스포츠학부 사회체육전공, 레저·레크리에이션전공 70
 - 8. 18 자매결연(태국 까셋삿대학교)
 - 9. 6 학문분야(법학부)평가 우수대학 선정
 - 12. 1 학문분야(컴퓨터공학) 현지방문 평가
 - 2001. 1. 12 자매결연(일본 메이카이대학교)

- 2. 13 정보통신부지정 정보통신관련학과(정보시스템전공) 장비지원사업 선정
- 2. 16 제16회 학위수여식(학사 1,471명, 석사 48명, 박사 2명)
- 2. 23 2000년도 학문분야(학부 및 대학원 컴퓨터공학)평가 우수대학선정
- 3. 2. 제20회 입학식
- 4. 10 자매결연(미국 바이올라대학교) BIOLA UNIVERSITY
- 5. 1 직제조정(교학지원처 → 교학처, 총무지원처 → 총무처, 교육지원팀 → 교무팀, 연구지원팀 → 연구교류팀, 학생지원팀 → 학생복지팀, 학생선발팀 → 입학관리팀, 예산팀 → 예산/검수팀, 총무행정팀 → 총무팀, 시설지원팀 → 시설관리팀, 대학원교학지원팀 → 대학원교학팀, 학술정보지원팀 → 수서팀과 열람팀, 외국어교육지원팀 → 외국어교육팀)
신설(교학처 학생서비스센터, 평생교육원)
- 6. 7 평생교육원 설립인가
- 6. 13 외국어학습관 및 외국어연구관 준공
- 6. 15 전국중학생 영어 · 고등학생외국어경시대회(전국시도교육청연합회주관) 개최
- 7. 25 2001학년도 전국고등학생외국어경시대회(부산외국어대학교주관)개최
- 7. 26 대학학생정원조정(정보경영과학부 130 → 141, 미안어과 40 → 38, 인문계열 200 → 193, 레저 · 스포츠학부 70 → 68)
- 8. 24 학생서비스센터(SSC) 개소
- 9. 25 제3회 전국 주한 외국인 한국어 웅변대회 및 장기자랑
- 2002. 2. 15 제17회 학위수여식(학사1,556명, 석사 44명, 박사3명)
- 2. 28 제21회 입학식
- 3. 1 직제조정(교학처→교무연구처 · 학생복지처, 기획조정처→기획입학처, 연구교류팀→연구지원팀)
- 신설(교무연구처 국제협력실, 학생복지처 야간강좌교학팀, 부속기관 외성생활관)
- 3. 12 개교 20주년
- 6. 5 직제조정(신설, 총무처 경리팀)
- 6. 15 제19회 전국시도연합회 주체 부산시 중학생 영어 및 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 개최
- 6. 26 모바일 캠퍼스 구축 조인(KT)
- 7. 25 제4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 우리대학교 주체
- 7. 31 2002년도 교육개혁 우수대학 재정지원 현지방문평가
- 8. 17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선정(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
- 8. 20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양산대학)
- 9. 1 제5대 서의택 총장 취임
- 10. 11 2002년도 지방대학 육성과제 재정지원 현지방문평가
- 10. 30 통역번역대학원 인가(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한영일전공, 한중일전공)
- 11. 18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 2003. 2. 21 제18회 학위 수여식(학사1,464명, 석사 40명, 박사 3명)
- 2. 28 제22회 입학식
- 3. 1 대학학생정원조정(불어과 45 → 40, 독일어과 45 → 40, 이태리어과 → 이탈리아어과, 아랍어과 40 → 35, 인도어과 40 → 35, 역사학과 → 역사관광학과, 외교학부 → 외교학과, 컴퓨터전자공학부 200 → 컴퓨터공학부 100(컴퓨터전공, 인터넷전공) · 디지털정보공학부 100(정보통신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전자공학과(야) →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 전공신설(레저스포츠학부 골프지도경영전공)
- 7. 3 2003년도 지방대학 육성과제 재정지

- 원 현지방문평가
- 7. 21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 2004. 2. 20 제19회 학위수여식
 - 2. 24 정보통신부 지정 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선정
 - 3. 1 대학학생정원조정(영어학부 65→70, 독일어과(야) 40→35, 러시아어과 35→40, 일본어과 65→70, 중국어과 65→70, 중국어과(야) 40→50, 아랍어과 35→38, 인문계열 193→국어국문·언어계열 100(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문화·역사관광계열 100(문화학과, 역사관광학과), 법학부 60→68, 법학부(야) 60→50, 경영학부 145→160, 국제통상학부 100→110, 정보경영과학부 141→126, 정보시스템학과(야) 40→30, 컴퓨터공학부 100→80, 디지털정보공학부 100→80, 컴퓨터공학과(야) 45→35,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 45→멀티미디어학과(야) 30, 레저스포츠학부 88→120
 - 3. 1 직제조정
 폐지(기획입학처, 정보화추진실) 신설(기획평가처, 입학홍보처, 교무연구처 교수학습개발실, 입학홍보처 홍보/대외협력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학생복지처 야간강좌교학팀) 조정(교무연구처 국제협력실→입학홍보처 대외협력실, 기획입학처 자체평가실→기획평가처 평가관리팀, 기획입학처 입학관리팀→입학홍보처 입학팀, 학생복지처 학생서비스팀→교무연구처 학생서비스팀, 취업정보실→학생복지처 취업정보센터, 전자계산소 전산정보팀→정보통신원 정보통신팀)
 - 3. 2 제23회 입학식
 - 4. 9 자매결연(우즈베크 타쉬켄트 사범대학)
 - 6. 7 제1회 부산광역시 일본어 말하기대회 개최(부산외국어대학교와 나가사키외국어대학 공동 개최)
 - 6. 11 자매결연(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 6. 14 자매결연(미얀마 양공외국어대학)
 - 7. 13 자매결연(태국 씨나카린위룻대학교)
 - 9. 17 자매결연(우즈베크 외국어대학교)
 - 10. 21-23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현지방문 평가
 - 12. 28 2003학년도 학문분야(경제학과)평가 전부분 ‘적합’ 인정
 - 2005. 1. 19 산학협정체결(group4falcck와의 산학협정체결)
 - 1. 28 자매결연(우즈베크 사마리칸트외국어대학교)
 - 2. 15 2004학년도 교육대학원(교육 프로그램) 평가 우수 인정
 - 2. 17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인정(교육 및 사회봉사영역: 최우수 / 발전 전략 및 비전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영역: 우수)
 - 2. 18 제20회 학위수여식
 - 3. 1 2005학년도 대학편제 및 정원조정(학부 트랙제 운영) 단과대학신설(법과대학), 정원조정(영어학부 70→영어학부 100(통역번역, 영미문학), 일본어과 70→일본어학부 90(일본어통번역, 일본어문화), 중국어과 70→중국어학부 80(중국어통번역, 중국통상), 아랍어과 38→40, 베트남어과 40→45, 미얀마어과 38→40, 국어국문·언어계열 100(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한국어문학부 65(한국어문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 50, 문화·역사관광계열 100(문화학과, 역사관광학과)→영상문화학부 55(영상미디어문화, 한국문화) 역사관광학과 40, 법학부 68(법학전공, 국제법무전공)→법학부 80(법학, 국제거래법), 경영학부 160(경영전공, 회계전공, e-비즈니스·경영정보전공)→경영학과 60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60 경영정보학과 40, 국

제통상학부 110(국제무역전공, 국제경제전공)→국제통상학과 50 비즈니스경제학과 45, 정보경영과학부 126(정보시스템전공, 정보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정보수학과 40 정보통계학과 40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 40, 컴퓨터공학부 80(컴퓨터전공, 인터넷전공)→컴퓨터공학부 70(컴퓨터매니지먼트·컨설팅, 디지털컨텐츠), 영어학부(야) 50→영어학과(야) 50, 불어과(야) 35→불어과(야) 25, 독일어과(야) 35→독일어과(야) 35, 러시아어과(야) 35→러시아어과(야) 35, 국어국문학과(야) 40→한국어문학과(야) 25, 법학부(야) 50→법학과(야) 35, 경영학부 90(경영전공, 회계전공, e-biz/경영정보전공)(야)→경영학과(야) 25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25 경영정보학과(야) 25, 신설학과(국제비서학부 60), 모집중단학과(정보시스템학과(야), 컴퓨터공학과(야), 멀티미디어학과(야))

3.2 제24회 입학식

3.16 산학협력체결 (부산교육청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위탁교육 협약식)

3.18 교류협정체결 (창신대학과의 교류협정체결)

3.21 산학협력체결 (현대자동차와 산학협력협정 체결식)

4.1 직제개편
 폐지(교무연구처, 교무연구처 연구지원팀,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서비스팀, 국제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신설(교무처, 교무처 교무인사팀, L스쿨, 국제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교육행정팀,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통역번역센터)
 조정(교무연구처 교무팀→교무처 학사운영팀, 학생복지처 취업정보센터→취업정보센터, 입학홍보처 입학팀

→입학홍보처 입학홍보팀, 입학홍보처 대외협력실→국제교류센터, 대외협력실 홍보/대외협력팀→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 학생상담실→취업정보센터 학생상담실)

4.4 자매결연(터키 앙카라대학)

4.27 산학협력체결(부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와의 산학협력협정)

5.17 자매결연(일본 바이카여자대학)

5.17 산학협력체결(드림골프서비스와 산학협력 체결)

5.23 자매결연(중국 북경외국어대학)

5.25 자매결연(중국 중남임학원)

6.17 산학협력체결(부산일보사와의 산학협력협정체결)

6.21 자매결연(캐나다 셀커크대학)

6.28 산학협력체결(에스텍시스템과 산학협력 체결)

7.8 자매결연(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8.16 산학협력체결((주) 국제어학당과 산학협력 체결)

9.28 산학협력체결(부산외대 시네마테크 부산과 산학협력체결)

10.12 자매결연(청도여행학교)

10.31 산학협력체결(마오필름(파) 산학협력체결)

11.2 산학협력체결(부산지방노동청과 관학교류·취업협력 체결)

11.3 자매결연(화동예술전수학교)

12.5 자매결연(공정학원)

12.9 자매결연(대런경제무역외어학원)

12.10 자매결연(대련외국어대학)

12.14 자매결연(래주제1중학)

12.14 자매결연(연주정보공정학교)

12.17 자매결연(상해공상외국어학원)

12.17 자매결연(상해공상외국어학원 부속고등학교)

12.20 자매결연(상해외국어학교)

2006. 2.17 제21회 학위수여식

2006. 3.1 2006학년도 대학편제 및 정원조정

단과대학명칭변경(정보과학대학→IT 대학), 단과대학신설(영어대학, 일본어대학, 국제대학), 정원조정(영어학부 100(통역번역, 영미문학)→영어학부 160(관광·컨벤션 영어,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 영미문학·문화컨텐츠, 영어·IT), 스페인어과 55→6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40→35, 이탈리아어과 40→35, 일본어학부 90(일본어통번역, 일본언어문화)→일본어학부 180(일본어통번역, 일본언어문화, 호텔관광일본어, 비즈니스IT일본어), 태국어과 40→35,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40→35, 아랍어과 40→35, 베트남어과 45→50, 미얀마어과 40→35, 중앙아시아어과 40→35, 국제비서학부 60→50, 한국어문학부 65(한국어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한국어문학부 65(한국어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영상문화학부 55(영상미디어문화, 한국문화)→영상미디어학과 40, 법학부 80(법학, 국제거래법)→법·경찰학부 80(법학, 경찰법무), 경영학과 60→65,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60→55, 경영정보학과 40→35, 비즈니스학과 45, 국제통상학과 50→65, 비즈니스경제학과 45→40, 정보수학과 40→정보수리학과 30, 정보통계학과 40→응용통계학과 40, 컴퓨터공학부(컴퓨터매니지먼트·컨설팅, 디지털컨텐츠) 70→60, 디지털정보공학부 80(정보통신, 멀티미디어)→디지털미디어학부 60(멀티미디어컨텐츠·게임, 멀티미디어통신), 레저·스포츠학부 120(사회체육, 레저·레크리에이션, 골프지도경영)→레저·스포츠학부 120(사회체육, 골프지도, 레저·스포츠경영, 영어과(야) 50→영어학부(야) 60(관광·컨벤션영어,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 일본어과 50→일본어학부(야) 60(호텔관광일본

어, 비즈니스IT일본어), 중국어과 50→중국어학부(야) 60(중국어통번역, 중국언어문화), 신설학과(EU지역통상학과 40, 중국지역통상학과 55, 러시아·인도통상학부 50(러시아지역통상, 인도지역통상), 모집중단학과(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 불어과(야), 독일어과(야), 러시아어과(야), 한국어문화과(야), 법학과(야),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

직제개편
신설(국제협력원), 조정(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원 국제교류센터,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국제협력원 한국어교육센터,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국제협력원 국제협력팀)

- 3.2 제25회 입학식
- 3.31 산학협력체결(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과 산학협력 체결
- 3.31 산학협력체결(주) 한진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 5.2 산학협력체결(주) 에이원 제이씨와 산학협력 체결
- 6.1 산학협력체결(현대중공업(주) 특수선사업부와 산학협력 체결)
- 8.24 총장 직무대행 류종렬 교무처장 임명
- 8.24 제5대 총장 서의택 박사 퇴임
- 9.25 산학협력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와 산학협력 체결)
- 11.10 산학협력체결(에쁜미소바른이 치과와 산학협력 체결)
- 11.29 산학협력체결((주) 코모도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 11.29 산학협력체결((주) 파라다이스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 12.8 산학협력체결(호메르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 2007. 2.9. 산학협력체결((주)제이아이와 산학협력체결)
- 3.1. 제6대 총장 유선규(柳宣圭)박사 취임

- 3. 1. 2007학년도 대학편제 및 정원조정
 정원조정(일본어학부(일본어통번역, 일본언어문화, 호텔관광일본어, 비즈니스IT일본어) 180→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일본어통번역, 일본언어문화) 80/ 비즈니스일본어학부(호텔관광일본어,비즈니스IT일본어) 80), 중국지역통상학과 55→50, 한국어문학부(한국어문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65→60, 법·경찰학부(법학,경찰법무) 80→120, 경영학과 65→경영학부(국제경영,서비스경영) 80,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55→회계·세무행정학부(회계,세무행정) 60, 응용통계학과 40→데이터경영학과 30, 컴퓨터공학부(컴퓨터 매니지먼트·컨설팅,디지털컨텐츠) 60→컴퓨터공학부(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개발) 60, 디지털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 콘텐츠·게임,멀티미디어통신) 60→디지털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정보통신) 60, 레저·스포츠학부(사회체육,골프지도,레저·스포츠경영) 120→90, 영어학부(야)(관광·컨벤션영어,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 60→50, 일본어학부(야)(호텔관광일본어,비즈니스IT일본어) 60→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호텔관광일본어,비즈니스IT일본어) 50, 중국어학부(야)(중국어통번역,중국어언어문화) 60→50), 신설학과(사회복지학과 40)
- 3. 2. 제27회 입학식
- 3. 5. 노동부 지원 “2007년도 대학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선정
- 3. 8. 학술교류협정 (일본 고치대학)
- 5. 21. 학술교류협정 (TESOL 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River Falls))
- 5. 31. 학술교류협정 (제주산업정보대학)
- 6. 31. 진료협약체결 (성모병원과의 진료협약체결)
- 8. 17. 직제개편

개편 (교무처 학사운영팀,교무인사팀, 교수학습개발실,학생서비스센터→교무처 교무지원부,학생서비스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보건진료소,사회봉사센터,장애복지센터→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취업정보센터,외생생활관, 기획평가처 기획팀, 예산팀,평가관리팀→기획부,평가관리센터, 입학홍보처 입학홍보팀→입학홍보처 입학홍보부, 총무처 총무팀,경리팀,시설관리팀→총무처 총무부,시설관리부, 캠퍼스건설본부→캠퍼스건설본부 캠퍼스건설부, 국제협력원 국제협력팀,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육센터→대의협력처 대외협력부,산학협력단,국제교류센터, 대학원 교학팀→대학원 교학지원실, 국제언어교육원 교육행정팀, 평생교육원, 국제협력원 한국어교육센터→국제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교육지원실, 중앙도서관 수서팀, 열람팀→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실) 신설 (총장비서실)

- 9. 13. 진료협약체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의 진료협약체결)
- 11. 13 관학 협정체결 (남주장애인복지관)
- 11. 13 관,산,학 협정체결 (일본 쓰시마시, (주)대아고속해운)
- 2008. 1. 14. 자매결연 협정체결 (일본 카라츠세이쇼 고등학교)
- 1. 22. 복수학위 협정체결 (미국 트로이대학)
- 1. 23. 복수학위 협정체결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
- 1. 26. 복수학위 협정체결 (미국 캘리포니아세크라멘토 주립대학)
- 2. 4. 남산동 캠퍼스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 2.13~15 2007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 3. 1. 2008학년도 대학편제 및 정원조정
 정원조정(태국어과 35→4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5→인도네시아·말

- 레이시아어과 40, 아랍어과 35→40, 국제통상학과 65→국제무역학과 50)
- 3. 3. 제28회 입학식
 - 3. 3. 직제 개편(교육대학원 중등교원연수원→특성화교육기관 교육연수원)
 - 3. 10. 단과대학 개편(8개 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일본어대학, 동양어대학, 국제대학, 인문사회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IT대학→6개 대학: 영·일·중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인문사회대학, 상경대학, 이공대학)
 - 3. 7. 20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 (부산지방노동청)
 - 3. 11. 제1회 총장배 고등부 학생골프대회 개최
 - 3. 18. 복수학위 협정체결 (호주 퀸즈랜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4. 1. 초·중등 영어교육 교사연수센터 운영양해각서체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직제개편(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지중해연구소→지중해지역원)
 - 4.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협약체결 (성지공고)
 - 5. 9. 산학협정체결 (일본 (주)어스인터 시스템즈(Earth Inter Systems), 케이비트(K-BIT), 스카이콤(SkyCom))
 - 5. 29. 대학원생교류협정 체결 (중국 천진의 국어대학 뻬하이외사학원과)
 - 6. 5. 복수학위 협정체결 (일본 나가사키 외국어대학)
 - 6. 9. 학술교류 협정체결 (미국 볼 주립대학 (Ball State University))
 - 6. 12. 총동문회 사무실 개소식 (의성관 304호)
 - 6. 20. 산·학 협약체결 (효성시티병원과의 실습기자재 활용 협약체결)
 - 6. 23. 학술교류 협정체결 (요르단 야르묵대학교(Yarmouk University)와의 교환학생 협정체결)
 - 6. 24. 산·학 협약체결 ((주)세정)
 - 6. 24. 제6회 복수학위제 외국인 유학생 학위 수여식
 - 7. 1. 남산동캠퍼스 마스터플랜 발표회
 - 8. 12. 인도네시아 안달라스 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체결
 - 8. 18. 제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영어캠프 개소식
 - 8. 22. 200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8. 26. 호주 테즈메니아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체결
 - 8. 27. 호주 썬사인코스트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체결
 - 9. 11. 말레이시아 술탄 이드리스 교육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체결
 - 9. 25. 태국 씨나카린위룻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체결
 - 11. 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의 상호협력 협정체결
 - 2009. 1. 1. 직제개편(국제통상대학원→국제통상경영대학원, 학생복지처→학생지원처, 학생지원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기획처 산학협력단)
 - 1. 5. 신년예배 및 인사회 개최
 - 1. 8. 제13회겨울방학 영어캠프
 - 2. 2. 제5회 재학생 영어캠프 개강식
 - 2. 17. 2009년도 해외 취업 연수기관 선정
 - 2. 22. 제 24회 200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 3. 1. 2009학년도 대학편제 및 정원조정 학과 신설(임베디드IT학과 30) 학부(과) 및 전공명 변경(회계·세무행정학부 회계전공→회계·세무행정학부 회계·금융관리전공, 비즈니스경제학과→경제학과, 레저·스포츠학부(사회체육전공, 골프지도전공, 레저·스포츠경영전공)→사회체육학부(생활체육지도전공, 골프전공, 스포츠경영전공)) 정원조정(컴퓨터공학부 60→ 컴퓨터공학과 30)
 - 3. 2. 2009학년도 입학식
 - 3. 3. 제2외성생활관 개관식
 - 3. 5. 부산 성모병원 부산외대 사회 공헌 협

약식

- 3. 9. 초 중등 영어 교사 심화연수개강식
- 3. 10. 중남미지역원 개원식
- 3. 27. 제2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배 학생 골프 대회
- 5. 6. 직제개편(교무처 교직과정부 신설, 교무처 교수학습개발센터→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지원처 취업정보센터→학생지원처 종합인력개발원, 교양연계학부→교양교직학부,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중남미지역원)
- 6. 4. 제7회 한일환경정화운동
- 7. 9. 제7회 복수학위제 외국인 유학생 학위 수여식
- 7. 15. 제3회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 7. 27. 200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테솔직무 연수 개강식
- 8. 17. 부산외국어대학교 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 학술교류협약 체결
- 8. 21. 200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 9. 4. 초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강식
- 9. 21. 제4회 자랑스러운 부산외대인상 시상식
- 10. 12. 제2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개최
- 10. 20. 유선규 총장, 제 24회 중국 외국어대학 컨소시엄 총장 회의 참석/북경외대 2+2 협정식
- 10. 26. 유선규 총장 상해외대, 광둥외어의무 대학 방문/협정 체결
- 11. 11. 부산외국어대학교-한국생산성본부 산학협정 체결식
- 12. 14. 하노이 인문사회과학 대학과 2+2협정 체결
- 12. 17.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산학협력 협약체결식
- 12. 17. 2009년 하반기 부산시청직원 외국어 교육과정 수료식
- 12. 19. 제11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2010. 1. 5. 경인년 신년회
- 2. 17. 직제개편(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동남아시아연구소→국제지역문화연구

센터 동남아 지역원

- 3. 1. 2010학년도 대학편제 및 정원조정 학부신설(글로벌자율전공학부 30) 전공명 변경(한국어문학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전공)
- 정원조정(영어학부(관광·컨벤션영어,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 영미문학·문화컨텐츠) 160→150),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일본어통번역, 일본언어문화) 80→75, 비즈니스일본어학부(호텔관광일본어, 비즈니스IT일본어) 80→75), 사회체육학부(생활체육지도, 골프, 스포츠경영) 90→80))
- 3. 2. 2010학년도 입학식
- 3. 19. 일본 후쿠오카여자대학교 교수 및 학생, 학술교류 협정체결
- 4. 9. 동남아지역원 개원식
- 6. 1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의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지원사업 협약체결식
- 8. 5. 제1회 부산외국어대학교 국토대장정 행사
- 8. 13. 브라질 싸우빠울루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 8. 20. 2009학년도 제25회 후기학위수여식
- 10. 9. 제3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대회
- 12. 14. 일본 무사시노 대학 사사키미즈에 교수 명예문학박사 학위수여식
- 2011. 1. 3. 2011학년도 신년예배 및 인사회
- 1. 10. 컴공과 유수희 학생,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 우수상 수상
- 2. 14. 유선규 총장 퇴임식
- 2. 14. 지중해 지역원/국립 요르단 대학교 전략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 2. 17. 제26회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 2. 17. 2010학년도 제26회 전기학위수여식
- 2. 17.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대학 협정 및 국제공동세미나
- 2. 21. 제7대 정해진 총장 취임식
- 2. 25. 2010학년도 겨울학기 외국인어학연수생 수료식

- 2. 28. 2011학년도 입학식
- 3. 4. 중남미지역원 제14차 월례세미나
- 3. 14. 미국 노스텍사스대학(UNT) 초청강연 실시
- 3. 15. 2011학년도 외국인유학생 환영의 밤 행사
- 3. 17. 오클라호마대학(UCO) 국제부 처장 내방
- 3. 17. 중남미지역원 제32회 초청강연회
- 3. 18. 부산외국어대학교 - 기장군 관학 협정 체결
- 3. 22. 성지학원 백성애 이사장 취임
- 3. 28. 미국 랜더대학교(Lander University)와의 학술협정 체결
- 3. 31.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3. 31. 제5회 자랑스러운 부산외대인상 시상식
- 4. 12. 클린캠퍼스운동 실시
- 4. 23. 한국어문화교육원 제8회 외국인 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 4. 26. 베트남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 총장 단 방문
- 5. 13.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봄학기 외국인어학연수생 수료식
- 5. 18. 정기영 대외협력처장, 부산시청 특별 강연
- 5. 18. 중남미지역원 2011협동연구 학술대회
- 5. 19. 차세대중남미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제6차도시연구시리즈
- 5. 21. 제7회 부산외대 총장기 고교 동아리 축구대회
- 5. 23. 지중해지역원 그리스 14th Annual Mediterranean Studies Congr
- 6. 3. 클린 캠퍼스 운동 결과
- 6. 7.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여름학기 한국어 교육과정 개강식
- 6. 10. 제4회 지중해지역원 고교생문화탐사 대상 시상식
- 6. 16.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 총장단 방문
- 6. 25. 제14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6. 28. 부산외대, 부산지방경찰청 경.학 교류 협정식
- 6. 30. 외국인유학생 복수 학위 수여식
- 7. 29.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도 1학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식
- 8. 3. 제 2회 PUFs 국토 대장정 발대식
- 8. 16. 기장군 어린이 영어캠프 개최
- 9. 5.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도 가을학기 정규과정 개강식
- 9. 22. 2011년 제 1기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
- 10. 6. 2011년도 제 4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대회
- 10. 8. 제9회 한일 환경정화 봉사활동
- 10. 25. 남산동 캠퍼스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기독교인연합기도회
- 11. 11.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도 가을학기 한국어교육과정 수료식
- 11. 15. 부산외대, 하노이 지역 최초 세종학당 개소
- 11. 22. 제 17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말하기 대회
- 12. 12. 제 4/5대 학군단장 이, 취임식
- 12. 14. 성지학원 가족초청 성탄절 예배&콘서트
- 12. 16. 일본 미야자키대학 학술협정체결
- 12. 23. 제 15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2012. 1. 2. 2012학년도 신년예배 및 인사회
- 1. 6.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아시아 정보시스템 산학협력 협약
- 1. 14. 제 1회 이기대도시공원 환경정화운동
- 1. 24. 정해린 총장,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방문 및 벤치마킹
- 1. 31.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동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식
- 2.15~17. 2012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 17.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정규과정 겨울학기 수료식
- 2. 20. 2012년 학군사관 50기 임관, 51기 승급, 52기 입단식
- 2. 21. 2011년 2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심화연수 수료식

- 2. 23~24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2. 28. 북경외대 복수학위제 1기 학위 수여
- 3. 3. 해외영어학기제(SAP) 1기 선발자출국
- 3. 8. 대학청년고용센터 개소식
- 3. 10. 부산외대 일본어학부와 일본 명해대학 부동산학부 교류회
- 3. 3. 해외영어학기제(SAP) 1기 선발자출국
- 3.10. 부산외대 일본어학부와 일본 명해대학 부동산학부 교류회
- 4. 4. 차이용 사지빠논 주한태국대사 내방
- 4. 5. 2012년 재경동문회 창립총회
- 4. 12. 주)한국 타이페이대표부와의 협정 체결
- 4. 13.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 부산외국어대학교와 MOU 체결
- 4. 16. 한국어문화교육원과 순다외어&비즈니스전문학교 협약 체결
- 4. 28. BUFS 봉사단 발대식 및 금정산환경정화운동
- 5. 2. 제9회 한국어말하기대회
- 5. 14. 상해외국어대학교 부총장단 내방
- 5. 18. 부산외대 HK(인문한국)사업 해외지역연구소 공동국제학술대회
- 5. 23. 이중언어 교재 개발 기관 선정
- 5. 23. 부산외대 제3기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
- 5. 24. 멕시코 인터콘티넨탈대학 총장 내방
- 5. 24. 미국 THE UNIVERSITY OF AKRON, STUDY TOUR 방문단 내방
- 5. 26. 제8회 부산외대 총장기 고교 동아리 축구대회 개막식
- 6. 15. 제16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6. 17. 제8회 부산외대 총장기 고교 동아리 축구대회 결과
- 6. 18. 2012학년도 여름방학 신입생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 6. 27. 제10회 복수학위제 외국인 유학생 수료식
- 6.27. (재)부산극동방송 산학협력 조인식
- 7. 2. 최초 여군장교 선발 격려 면담
- 7. 2. 제15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식
- 7. 5. 중국 남화공상대학 당서기 일행 방문
- 7. 6. 2012학년도 1학기 우수강의 에세이 선

- 정 결과
- 7. 10. 말레이시아 국립교원대학교(UPSI)부 총장단 내방
- 7. 13. 한국어문화교육원 2012년 여름학기 문화체험
- 7. 13. 2012학년도 여름방학 재학생 영어캠프 수료식
- 7. 23. 한국어문화교육원 일본인 단기 연수 개강식
- 7. 23. 교육연수원 초중등 심화연수 개강식
- 7. 23. 부산전자공고 글로벌 영어캠프
- 7. 27. 제8회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 7. 27. 일본인 단기연수 수료식
- 7. 27. 제 15기 하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식
- 7. 31. 제 5회 부산외국어대 총장배 브라마 전국 학생 골프대회
- 8. 6. 2012년 여름 기장군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
- 8. 6. Nicholas T. Dammen 인도네시아 대사 내방
- 8. 6. 2012 중남미 지역원 하계 워크숍
- 8. 10. 2012년 여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수료식
- 8. 10. 2012학년도 제 13회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 교사 워크숍
- 8. 14. 영도여자고등학교 자매결연 협정 체결
- 8. 16. 순다외대 한국어 단기 연수 개강식
- 8. 17.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8. 19. 순다외대 단기연수 수료식
- 8. 23. 중남임업과기대학 총장단 방문
- 8. 23. 제4기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
- 8. 27. 초 · 중영어교사 심화연수 1기 수료식
- 8. 28. 인도네시아 하사누딘대학교(UNHAS) 총장단 내방
- 9. 1. 한일일어일문학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및 초청강연
- 9. 3. 2012학년도 하반기 교직원사령식
- 9. 3. 한국어문화교육원 2012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식
- 9. 10. 교직원 사령식

- 9. 12. 고흥군청 협정체결식
- 9. 17. 부산외국어대학교-[주]AST컨소시엄 산학협정식
- 9. 19. 일한언어문화교류원 단기과정 수료식
- 9. 19.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학협력 협약체결
- 9. 21. 2012년 특성화교육원 제18차 GLE학술세미나
- 9. 21. 학습법특강-SU step1 결과
- 9. 22. 외국인유학생 환영회 및 전통문화체험
- 9. 22. 학교주변지역 환경정화운동
- 9. 25. 김수일 교수 인도네시아 경제장관 초청 간담회
- 9. 28. 한국어문화교육원 2012년 가을학기 문화체험
- 10. 5. 학습법특강-SU step2 결과
- 10. 5. 제10회 한일환경정화운동
- 10. 10. 직원 사령식
- 10. 10. 사이판 북마리아나대학(NMC) 총장단 방문
- 10. 11. 하병주 교수 학술대회 개최
- 10. 12. 송향근 교수,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임명
- 10. 12. 2012 외국인 한국어겨루기 대회
- 10. 16. 부산구치소와의 협정체결
- 10. 19.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내방
- 10. 19. 교수법특강 결과보고
- 10. 22.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10. 23. 글로벌튜터링 중간보고회
- 10. 23. 중국 산동성 우수 교육기관 방문단
- 10. 24. 부산외대-경기도교육청 제2외국어교육관련 MOU체결
- 10. 26. 제 12회 세계 이탈리아어 주간 행사
- 10. 26. 학습법특강 SU-Step3 결과
- 10. 26. 태국어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10. 29. 한국 교육 현실과 교육 혁신 과제
- 10. 29. 2012학년도 1학기 강의 평가 우수 교원 시상식
- 10. 30. 순다외대 한국어 수업 및 특강
- 10. 31.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
- 11. 2. 순다외대 한국어 수업 및 특강 수료식
- 11. 2. 외교학과, 대학생 모의시의회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 11. 3. 일본어 말하기 대회 프리젠테이션부분 우수자
- 11. 6. 순다외대 한국어 단기 과정 개강식
- 11. 6. 특성화교육원 조재형 교수, 연구성과 Economy Journal 11월호에 소개
- 11. 8. 2012년도 제1회 교수장학금 수여식
- 11. 9. 2012년 가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수료식
- 11. 9. 동남아시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MOU체결
- 11. 9. 학습법특강 SU-Step4 결과
- 11. 11. 정해린 총장, 중국지역 8개 대학 방문 및 협정체결
- 11. 20. 한국문화교류재단 중국유학생 장학금 대상자 선정
- 11. 20. 부산외대-하나산업사 협정식
- 11. 22. 2012학년도 추수감사절예배
- 11. 23. 부산외대-이성수한의원 협약 체결
- 11. 23. 학습법특강 SU-Step5 결과
- 11. 26. 글로벌 튜터링 기말총평회
- 11. 30. 중남미지역원 제37회 초청강연회
- 12. 3. 한국어문화교육원 2012학년도 겨울학기 개강식
- 12. 3.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공동주관
- 12. 3. 발전기금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 12. 4. 순다외대 한국어 단기 과정 개강식
- 12. 5. 교수법런칭좌담회 결과보고
- 12. 6. 제10회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
- 12. 7. 순다외대 한국어 수업 단기과정 수료식
- 12. 8. 기장군 청소년 글로벌 뉴리더프로그램 수료식
- 12. 10. 중국 천진외대 총장단 내방
- 12. 11. 중남미지역원 제17차 콜로키엄 개최
- 12. 1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 12. 14. 제17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12. 14. 2012년 성지학원 가족초청 [성탄절예

- 배 & 콘서트]
- 12. 17. 2012학년도 겨울방학 재학생 영어캠프 개강식
 - 12. 17. 크루즈 중국어관광통역사 현장실습과정 수료식
 - 12. 18. 중남미지역원 2012 협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 12. 18. 제5기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
 - 12. 21. 2012년 송년 축제
 - 2013. 1. 3. 2013년 겨울 기장군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
 - 1. 4. 2013년 사랑의 연탄 & 내복 나눔 운동
 - 1. 4. 2012학년도 겨울방학 재학생 영어캠프 수료식
 - 1. 7. 제16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식
 - 1. 10. 중남미지역원 제 18회 콜로키엄 개최
 - 1. 16. 중남미지역원 제 19회 콜로키엄 개최
 - 1. 25. 2012년 초·중·등 영어교사 수업실습형 국외심화연수 수료식
 - 1. 27. 인도어과 네루대 단기연수 수료식
 - 2. 1. 제16기 동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식
 - 2. 6. 2013년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행사
 - 2. 8. 2012학년도 겨울학기 정규과정 수료식
 - 2. 19. 2013년도 학군사관 51기 임관, 52기 승급, 53기 입단식
 - 2. 20~21. 2013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 21. 북경외대 복수학위제 2기 학위 수여
 - 2. 21~22. 2012학년도 제28회 전기 학위수여식
 - 2. 22. 순다이외대 단기과정 수료식
 - 2. 22. 2013학년도 제 14회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 교사 워크숍
 - 2. 22. 2012학년도 하반기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수료식 개최
 - 2. 26.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제20차 콜로키엄 개최
 - 2. 27.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 외국인유학생 OT
 - 3. 4. 한국어문화교육원 2013학년도 봄학기 개강식
 - 3. 8. 남산동 캠퍼스 신축공사 현장투어
 - 3. 14. 부산외대와 (주)파이오니아소프트 산학협정식
 - 3. 15. 해외영어학기제(SAP) 3기 선발자 파견
 - 3. 18. 2013년 1학기 글로벌 튜터링 오리엔테이션
 - 4. 5. 중남미지역원 제 21차 콜로키엄
 - 4. 10. 중남미지역원 제 40회 초청강연회
 - 4. 15. 미국 애즈베리대학교 총장 초청 특강
 - 4. 19. 2013 CEP (중국지역 교환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4. 23. 제2회 중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행사
 - 4. 26. 재부산일본국총영사 내방
 - 4. 26. 중남미지역원 2013 국제학술대회
 - 5. 3. 제10회 외국인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 5. 11. 기장군 해변 환경정화운동
 - 5. 14. 엑스포뉴스, (주)빅스미디어 산학협력협정식
 - 5. 21. (주)COHAS (코하스) 산학협력협정식
 - 5. 21. 제6기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
 - 5. 24.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식
 - 5. 24. 제11회 한일 환경정화운동 실시
 - 6. 1. 제10회 전국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및 말하기 대회
 - 6. 7.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MOU체결
 - 6. 20. 제18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6. 25. 산통교통대학교 재경대학 마소남 학장 방문
 - 7. 1. 제17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식
 - 7. 24. 광둥외어외무대학교 중국언어문화대학 진안회 학장단 방문
 - 7. 25. 부산외대-대전주조 상호협력협약식
 - 7. 26. 제15기 하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식
 - 8. 5. 나가사키외대 한국어 단기 연수 개강식
 - 8. 12. 순다이외대 한국어 연수 개강식
 - 8. 22. 나가사키외대와 후쿠오카여대 한국어 단기 연수 수료식
 - 8. 23. 순다이외대 한국어 단기 연수 수료식
 - 9. 25. 대련민족대학교 소수민족 우수학생

- 대표단 일행 방문
- 10. 8. 제 6회 교내 외국인 한글뽐내기 대회 개최
 - 10. 21. 말레이시아 말라카 이슬람대학 부총장단 방문
 - 10. 21.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립대학교 자매결연
 - 10. 22. 중국 안산시범대학교 방문단 내방
 - 10. 24. 남산동캠퍼스 점등식
 - 11. 6. (사)한국-브라질 소사이어터와 협정 체결
 - 11. 13. 북경어언대학교 총장단 일행 내방 및 협정체결
 - 11. 18. 제19회 교내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 11. 19. 부산외대-(주)태성정밀과의 산학협력 협정식
 - 11. 27. 부산외대-한국무역협회 KITA(경남본부)산학협력 협정식
 - 12. 6. 중국 흑룡강대학교 부총장단 일행 내방 및 협정체결
 - 12. 20. 2013학년도 2학기 외국인 교환학생 수료식
 - 12. 24.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대학 선정
 - 12. 27. 부산외국어대학교,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 12. 27.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청년 고용센터 2년 연속 A등급 선정
 - 12. 30. 글로벌마케터 산학협력 협정식
 - 2014. 1. 2. 2014년도 신년예배 및 인사회
 - 1. 6. 동락화학공업사 대표 대학 발전기금 전달
 - 1. 13. 2014 겨울 순다이의외대 단기 연수과정 개강식
 - 2. 26. 2013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 2. 27. 2014학년도 입학식
 - 3. 11. 부산외대-한국무역협회 산학협약식
 - 3. 28. 부산외대-금정구청,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산학협정 조인식
 - 3. 31. 한국어문화교육원 2014년 일본 키키대학교 단기 연수과정 수료식
 - 4. 8. 인도네시아 빠물랑대학교와의 협력체결 및 현지 외국인유학생 유치설명회 개최
 - 4. 8. 부산외대-시스코 산학협약식
 - 4. 10. 이민자사회통합센터 현판식
 - 4. 11. 러시아 부랴트국립대학교 총장단 내방
 - 4. 14. 부산외대-이피피인터랙티브, 산학협정
 - 4. 22. 부산외대-한일문화교류협, 산학협력협약
 - 5. 26. 일본 오카야마현 기비국제대학과 교류협정
 - 6. 7. 2014학년도 제11회 전국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및 말하기 대회 개최
 - 6. 30. 2014년 제 19기 하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강식
 - 7. 1. 사회봉사센터와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MOU)체결
 - 7. 9. 광동외어외무대학교 총장단 내방
 - 7. 17. (주)크레듀 산학협정체결
 - 7. 30. 주한 콜롬비아 대사 일행 본교 방문
 - 9. 19.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9. 24. 코스타리카 국립대 베르날 에레라 몬테로 부총장 방문
 - 9. 26. 인도 KIIT대학교와의 학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10. 1. 제1회 파이데이아 체임버 콘서트
 - 10. 27.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일본 (주)케어크리에이트 협약체결
 - 10. 28.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역공동체 동행체제 구축 및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 축제 개최
 - 11. 12. 사회봉사센터-와치종합사회복지관 산학협력 체결식
 - 11. 13.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
 - 11. 14. 부산외대-부산경영자총협회 산학협약식
 - 11. 15. 외교학과 창립 30주년기념 정기동문회 개최
 - 11. 20. 주 중국상해총영사 초청특강 실시

- | | |
|---|---|
| 11. 21. 글로컬마케터 양성 산학협약식 | 체결 |
| 11. 26. 부산시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우수대학 표창 | 4.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호협력 협약식 |
| 11. 27. 부산외대-신성중공업 산학협약식 | 4. 16. 일본 전통 다도실 조성 완료 |
| 12. 3. 부산항만공사와 산학업무 협력 협약식 체결 | 4. 17. <협약식 : 백이안과> 협력병원 진료 협약식 |
| 12. 8. (주)씨알푸드와 상호협력 협약식 및 '외성 글로컬마케터'양성제휴 계약 | 5.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
| 12. 9.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5. 18. 2015년 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수료식 |
| 12. 19. 제20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5. 27. 제8대 총장 취임예배 |
| 12. 30. 와치노인복지센터 협약식 | 5. 29. 2015년 대마도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
| 12. 30. (주)유니크라미 협약식 | 6. 15. 2015년 여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개강식 |
| 2015. 1. 5. 2015년 신년 예배 및 인사회 | 6. 19. 제21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 1. 13. 베스트인 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 7. 1. 한국연구재단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선정 |
| 1. 22.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약식 체결 | 7. 27. 제11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기 교동아리축구대회 |
| 1. 23. 삼성전기(주)와 업무협약 체결 | 8.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선정 |
| 1. 23. 중남미지역원-KOICA, 2015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약정 체결식 | 8. 21. 2014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 2. 1. KOICA 2015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 8. 24. 2015년도 제2차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연수 개최 |
| 2. 4. 주한 스페인 대사 일행 본교 방문 | 9. 2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협약식 |
| 2. 4. 양산 상공회의소 협력 협약식 체결 | 9. 24. 2015년 여름학기 문화체험 |
| 2. 6. 라인업치과와 산학협력병원진료협약식 | 10.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사업 선정
창업진흥원 2015 3D프린터 보급지원사업 선정 |
| 2. 6. 2014년 겨울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수료식 | 10. 15. ACE대학 선정 기념 "부산외대 가을음악회" 개최 |
| 2. 13. 남산모터스와 상호 협력 협약식 | 10. 21.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벨헤이븐대학교 로저페룻 총장 |
|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상호업무 협력 협약식 체결 | 10. 23. 주일본부산시무역사무소 관학협정 체결 |
| 3. 17. 부산외대 최고국제경영자과정(AMP) 제16기 입학식 거행 | 10. 27.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
| 3. 18. 제3회 파이데이아 체임버 콘서트 개최 | 10. 28. 부산영상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 3. 19. 남광종합사회복지관 협약식 | 11. 4. 동티모르한국어학교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 |
| 3. 20.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협약식 | 1.10. 한국청소년상담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 4. 2. 제2회 아르케자유인문특강 개최 | 11.12. 2015 아세안 로드쇼 개최 |
| 4. 6. <E-NET주식회사> 와 <일본어창의융합학부> 산학협정체결 | 11.13.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 |
| 4. 10. (주)국제식품과 상호업무협력협약식 | |

- 체결
- 11.16. 손재림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체결
- 11.17. 삼원FA(주)와의 상호 업무협약체결
- 12.10. 부산지방공단스포윈과의 업무협약체결
동서콘솔(주)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12.18. (주)오토닉스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12.23. 부산시설공단과의 업무협약체결
- 12.28. 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업무협약
체결
부산교통방송과의 업무협약체결
- 2016. 1. 4. 2016년 신년예배 및 인사회
 - 1.15. 설립자 추모 예배
 - 2.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설립
 - 2. 1. KOICA 2016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
해증진사업 선정
 - 2.17. 경주 마우나오선리조트 참사 2주기 추
모식
 - 2.15. 2016학년도 입학식(1)
 - 2.16. 일·학습병행제 IPP사업 선정
 - 2.17. 2016학년도 입학식(2)
 - 2.19.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2.24.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2.25. 해외취업지원 청해진대학 사업선정
 - 3.18. 코어사업 선정
GLE, 글로벌현장학습사업 선정
 - 3.23. 시청자미디어재단부산센터와 업무협
약체결
 - 3.24. 데이터스트림즈와 업무협약체결
 - 3.3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체결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체결
 - 4. 1. 일본 관동국제고등학교 협약식
 - 4. 6. 2016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선정
 - 4.26.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와의 업무
협약 체결
 - 4.29. J-BIT사업단, 자유학기제 지원협약 체결
 - 5. 2. 소방안전 및 119 구조 구급 기술사업
선정
 - 5. 6. 일본 쓰시마시장 본교내방 상호 교류
협정 체결
- 5.16. 일본소프트웨어협회(IIA)와의 산학협
정서 체결
- 5.17. (주)디즈텍과의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6.22. 학군단, 부산지방보훈청과 협정식 체결
- 7.11. 중남미지역원(주)EC21과 협정체결
- 7.25. 제 21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강식
- 8. 1. 동남아시아업단 2016 한-아세안 청년 네
트워크 워크숍 지원
- 8.10. 2016년 부산시 초중등 관리자 다문화
이해교육 직무연수
- 8.19. 2016 하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21기)
수료식
2015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9. 6. 대한제강(주)와의 상호 업무협약체결
- 9.23. 세정나눔재단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수여식
- 9.29. 2016 한국-미얀마 연계성 포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출범식
- 11. 2.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의 업무협약체결
- 11. 3. 제3회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축제의 밤

